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58
----------	-----

제안연월일 : 2014.12.18.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2014년 11월 7일 이승로 의원과 김인제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3	이승로·김인제 의원 (22인 찬성)	2014.11.07.	2014.11.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7	서울특별시장	2014.10.30.	2014.11.05.

- 2014년 12월 18일 제257회 정례회 제9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시 이상 2건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임.

## 2. 대안의 제안이유

-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일정 요건시 임기만료 전 해촉가능 규정을 신설하며, 관계기관·부서의 개정 수요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명확히 하며(안 제58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함. (안 제58조의3 신설)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획지변경, 기반시설 변경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로 권한위임하고 이를 위하여 자치구에 공동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63조 및 안 별표4)
- 다.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배전함 등을 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확대 규정하며(안 제55조제18항), 그밖에 자치입법의 명확화를 위해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을 삭제하고 후단의 “조례 및 규칙”을 “조례”로 한다.

제13조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본문의 단서”를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한다.

제28조제1항나목 중 “제26조제1항제5호”를 “제27조”로 한다.

제55조제6항 중 “영 제85조제5항”을 “영 제8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영 제85조제7항”을 “영 제85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지하철출입구·환기구·배전함 등(이하 “지하철출입구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지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2. 건물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등의 연면적 / 건물 연

면적) 이내

제56조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의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58조의2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제1항에”로 하며, 후단의 “한다.”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한다.

제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58조의2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6. 제5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감사원장 또는 서울특별시 장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제63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57조제2항”을 “제56조, 제57조제2항”으로 하며, “제58조제6항”을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8조의2, 제58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권한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7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별표4 중 제2호 본문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도시관리계획은”을 “도시관리계획은”으로 하고 제4호 나목의 “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를 “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 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획지면적 변경인 경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u>조례 및 규칙</u>에 따라 관리한다.</p>	<p>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 ----- ----- <u>「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u>, ----- ----- ----- ----- <u>조례</u> ----- -----.</p>
<p>제13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 <u>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제13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 ----- <u>「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u></p>
<p>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4항 <u>본문의 단서</u>에 따라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① ----- ----- ----- <u>각 호 외의 부분 후단</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p>	<p>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 -----</p>





현행	개정안
<p>제58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시도 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li> <li>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58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p>&lt;삭제&gt;</p> <p>&lt;삭제&gt;</p> <p>② ----- 제1항에 ----- ----- 하 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위원장은 해당 안전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한다.</p>
<p>&lt;신설&gt;</p>	<p>제58조의3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li> <li>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li> <li>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li> </ol>

현행	개정안
<p>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제57조제2항, 제5항부터 제10항, 제58조제6항,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67조 (임용 및 복무 등) ①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에 따른다.</p> <p>② (생략)</p>	<p>4.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p> <p>5. 위원이 제58조의2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해를 가져 온 경우</p> <p>6. 제5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감사원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p> <p>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p> <p>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제56조, 제57조제2항 -----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8조의2, 제58조의3 -----.</p> <p>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권한위임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67조 (임용 및 복무 등) ①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별표 4]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		[별표 4]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	
사무명	관계법령	사무명	관계법령
<p>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중 다음의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둘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u>도시관리계획</u>, <u>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도시관리계획</u>은 제외한다)</p> <p>가.~너. (생략)</p> <p>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단, 특별계획구역내에서 시장이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은 제외한다).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및 자목의 경에는 2회 이상 나누어 변경하는 때에는 총 변경되는 합을 말한다.</p> <p>가. (생략)</p> <p>나. 가구(<u>영 제48조제4호의 규정</u>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p> <p>다. <u>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u></p> <p>라.~더. (생략)</p>	(생략)	<p>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중 다음의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둘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u>도시관리계획</u>은 제외한다)</p> <p>가.~너.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가구(<u>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u>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p> <p>다. <u>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 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대 개발규모 이내의 획지면적 변경인 경우</u></p> <p>라.~더. (현행과 같음)</p>	(현행과 같음)